

업 무 보 고 사 항

□ 제 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-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- '95. 9. 4
 - . 집회일시 : '95. 9. 12 (화) 오후 14시
 - . 집회이유

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{ | 상. 하수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개정조례안 심사처리 |
| | 군정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 |
 - . 집회 요구자 : 홍이식 의원 외 3명

- 제 37회 화순군의회 집회공고 - '95. 9. 6 (화순군의회 공고 1995 - 6호)
< 공고내용 >
 - . 일 시 : '95. 9. 12 (화) 오후 14시
 - . 장 소 : 화순군의회 의사당

□ 각종 안건 발의 및 제출사항

- 제 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발의
 - . 발의자 : 문정조 의원 외 3명
 - . 회 기 : '95. 9. 12 ~ 9. 16 (5일간)

-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서요구의 건 발의
 - . 발의자 : 정광수 의원 외 3인
 - . 출석요구내용 : 별 첨

- 상. 하수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발의
 - . 발의자 : 홍이식 의원 외 5명
 - . 발의내용 : 조사계획서에 의함

□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제출 - '95. 8. 31

○ 제 안 이 유

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('95. 7. 1 제 14703호) 되어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 및 고시방법이 령 개정이전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규정하였던것을 공보에 게재만으로 공포 또는 고시할 수 있도록 됨에따라 화순군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을 정하려는 것임

○ 주 요 골 자

조례 규칙등의 공포는 공보에의 게재로 함 (안 제 7조)

- 다만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함

□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제출 - '95. 8. 31

○ 제 안 이 유

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○ 주 요 골 자

- .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 제 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 (조례 제 4조)
- .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함. (조례 제 37조의 2)
- 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(도로, 하천등) 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
- .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
- .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㎡에서 700㎡로 확대 (조례 제 39조의 2)

- .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는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(조례 제 39조의 3).

□ 화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(안) 제출 - '95. 9. 4

○ 제 안 이 유

- . 주차장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화순군주차장조례를 정비하고
- .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며
- .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○ 주 요 골 자

- . 주차요금 인상 (별표 1 참조)
- .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(별표 2 참조)
- .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: 거리단축 (300m → 200m 이내)
- .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: 세입, 세출 및 설치비 용자에 관한 사항
- . 과징금 처분 : 가감부과기준 (별표 3 참조)

□ 각종 민원 접수처리 상황

○ 고려시멘트 원석채취 기간 연장 승인반대 입장 진정서 접수

- 진 정 인 : 곡성군 오산면 이장단장 강제성 외 21인
- 진정요지 : '95. 12. 31 로 끝나는 원석채취기간을 회사측에서 연장 승인 신청할 경우 인근면민에게 미쳐왔던 간접적인 피해는 더이상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는 진정내용
- 처리결과 : 이후 산림허가 연장허가 신청이 있을때는 진정내용과 운송차량의 적법운행 여부등을 충분히 감안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됨

○ 보전임지 해제 건의서 접수

- 건 의 인 : 화순군 남면 절산리 646 - 1 김용재

- 건의요지 : 자기소유 농장에 대한 보전임지 책정을 해제하여 달라는
건의 내용

- 처리결과 : 보전임지 해제가 불가하나 가능한 구제 방법을 적시하여 회신

□ 제 37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

○ 회기결정의 건

○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○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